



제429회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시행〉

■ 오세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713호)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 · 시행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오세회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9. 5.
3. 회부연월일 : 2025. 9.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배송·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시행

개정안은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과 제4장(소상공인 보호 시책)에서 다양한 소상공인시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된 소상공인시책

제3장(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4장(소상공인 보호 시책)
제11조 창업촉진 및 성장	제23조 경영안정의 지원
제12조 인력 확보의 지원	제24조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제13조 직무능력 향상 지원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제14조 판로의 확보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제15조 디지털화 지원	제27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제16조 혁신의 촉진	제28조 사업 영역의 보호
제17조 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29조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제18조 국제화 촉진	제30조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19조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제31조 조세의 감면
제20조 업종별 지원	
제21조 상권 등 집적지역의 지원	
제22조 구조고도화의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¹⁾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비율은 12.9%로, 최근 3년간 소폭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전체 매출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71.3%로 나타났는바, 전자상거래가 소상공인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은 반면,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임.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2025.6.

소상공인의 전자상거래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상공인 사업체 수	4,117,458개	4,124,202개	5,960,788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 여부 (전자상거래 실적인 있는 소상공인 비율)	11.1%	11.4%	12.9%
전자상거래 매출실적 비중 (전체 매출에서 전자상거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66.8%	71.9%	71.3%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참고로,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에 관한 연구²⁾에 따르면, 경남지역 거주자의 전자상거래 소비 활성화로 인해 지역 내 자영업자의 경쟁범위가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진 반면, 전자상거래 활용도는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상황임.

동 연구는 이러한 상황이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유출이 증가하고 소비유입은 제약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소비순유출 지속 및 자영업자의 경영상황 악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하였는바, 전자상거래 확산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소상공인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책의 수립·시행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짐.

개정안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이나 AI(인공지능) 기술 발전,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소상공인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한다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2)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지역 자영업 부진의 구조적 요인 및 시사점”, 2025.1.

로 보이는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 등의 시책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³⁾, 「지속가능발전기본법」⁴⁾, 「해사안전법」⁵⁾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시행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유사·중복 조항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3조제1항⁶⁾에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5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8조(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25조(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해사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양시설의 관리, 해상교통망의 구축 및 관리, 해상교통 관련 신기술의 개발·기반조성 지원,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